

구조물해체 · 비계공사업

■ 업무내용

구조물해체공사 :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비계공사 :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 등록기준

2025.10.01 개정 기준

1. 자본금

법인	개인
1.5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2. 기술능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 · 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 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용접,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화학류관리
기능장	용접, 위험물,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기사	용접, 토목, 콘크리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화학류관리
산업기사	굴착기, 기중기, 기계조립, 용접, 위험물, 토목, 콘크리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제도, 철근, 화학류관리, 굴착
기능사	굴착기운전,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기계가공조립,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위험물, 콘크리트, 측량, 거푸집,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근, 화학취급
기능사보	다듬질,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콘크리트, 거푸집, 비계, 철근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

3. 공제조합

2026.07.27 기준

업종	1좌당	자본금	CC등급 이상	C등급
구조물해체 · 비계 공사업	958,438원	1.5억원	42좌 (40,254,396원)	53좌 (50,797,214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동일				

4. 시설 · 장비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안에 있어야 한다.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 등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등록 불가

신규등록 소요기간

평균 30~45일 이내 소요